

대통령령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비중동지역”을 “다변화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항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미주(美洲),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(이하 “ <u>비중동지역</u> ”이라 한다)에서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<u>비중동지역</u> 에서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하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(“다변화지역”-----)----- <u>2024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다변화지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석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-5222